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20. 12.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정의와 목적

- 인권영향평가란 광의의 의미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 평가의 결과를 의미, 협의의 의미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제도나 절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18)
- 공공기관 사업이나 경영에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가인권위원회, 2018)

2. 인권경영 추진 조직

- (1) 인권경영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각 4인으로 구성
 - 내부위원(4인): 부원장(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행정지원실장, 노동조합 대표
 - 외부위원(4인): 김민우 교수(고려대 인권센터), 유재윤 교수(공주대),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최두선 원장(공공재정연구원)
 - 간사(1인): 감사실장(인권경영 총괄부서장)
- (2)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지원조직: 인권경영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및 지원
 - 인권경영 전담부서: 감사실(3인)
 - 인권경영TF(11인): 감사실 직원, 기획경영본부·행정지원실·지식관리팀 보직자
- (3)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감사실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로 지정·운영

3. 인권경영 실행규정

- 인권경영 이행규정('19. 9. 9)
- 인권침해 구제지침 제정('20. 9.14)
-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기준 개정('20. 9.14)
- 협력기관(업체)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정('20.12. 7)

4. 교육 실적

- 전직원 대상 교육
 - 인권교육(2회): 갑질 예방교육(6.16, 정승호 대표), 기업과 인권의 이해(8. 3, 김민우 교수)
 - 사회적 약자 보호교육(2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7. 6, 외부장사), 아동학대 예방교육(8.31~9.25, 온라인)
 - 인트라넷 교육: 갑질근절 교육 동영상 게시(국민권익위원회 제작)
- 인권경영TF 교육: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10.29, 외부장사)
-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인권의 이해(10시간), 차별예방교육(13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5. 내·외부 갑질조사 실시

- 협력기관(업체)업체 대상 설문조사: 171개 협력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인권침해관련 설문조사 실시(10.29~11.16)
- 직원 대상 갑질조사: 감사실장이 연구원 취약계층 16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실시
 - 사무원 7인(여성), 계약직 연구원 7인, 3급행정원 2인 등 총 16인(7.20~7.23)

6.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12.14.(월), 15시 (3층 세미나실, 집합·화상으로 회의개최)
- 참석 위원
 - 내부: 문정호 부원장(위원장), 김명수 기획경영본부장, 오경근 행정실장
 - 외부: 유재윤 교수(공주대), 최두선 원장(공공재정연구원)
 - 보고자: 박종택 감사실장(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외부전문가(사업무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감사실 직원 인 배석
- 내용: 2020년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심의
-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열린소리함(익명)을 운영하여 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은 긍정적인
 - 세대, 상·하, 동료 간 존중·배려하며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화합하는 조직분위기 마련이 가장 중요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연구부문 체크리스트를 연구기관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체크리스트의 인권관련 지표의 범위를 좁히고, 향후 시범적으로 몇 개의 과제를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결과보고서 수정·보완 요구)

I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국가인권위(2018)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우리 원 실정에 맞게 수정·작성
 - 2019년 인권경영 전문기관에 「국토 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원 담당부서 직언과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10개 분야, 31개 항목, 143개 지표로 구성

〈표 1〉 체크리스트 분야·항목 및 지표 수

| 분야 | | 항목 | 지표 수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 6 |
|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6 |
| |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5 |
| | | 인권경영 성과 | 7 |
| | | 구제절차 마련 | 6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 5 |
| |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7 |
|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3 |
| |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 3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4 |
| |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 5 |
| |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5 |
| 4-1 |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 8 |
| 4-2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7 |
| 4-3 |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 10 |
| 5 | 산업안전 보장 | 연구원 내 안전 | 4 |
| |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4 |
| | | 필수장비 및 교육 | 1 |
| | | 피해 근로자 지원 | 3 |
| 6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 4 |
| | | 모니터링 실시 | 2 |
| |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4 |
| 7 | 저작권 보호 | 타인의 저작권 보호 | 3 |
| 8 |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 6 |
| | | 환경정보의 공개 | 2 |
| | | 비상계획 수립 | 3 |
| 9 |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 5 |
| | | 국민 사생활 보호 | 6 |
| 10 | 기타인권 보호 | 정보인권 보호 | 3 |
| | | 일·가정양립 | 3 |
| | | 모성 보호 | 3 |
| 10개 분야 | | 31개 항목 | 143개 지표 |

2. 평가방법

- 2019년에 마련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실적을 토대로 각 부서 보직자로 구성된 「인권경영TF」에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감사실에서 최종 검토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10.29~12.10)
- 인권경영TF: 감사실(3인), 기획경영본부·행정지원실·지식관리팀 보직자(8인)

3. 평가결과

- 2020년 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준수율이 향상됨
- 총 143개 지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표를 준수한 항목은 139개 지표, ‘보완필요’는 1개 지표, ‘해당 없음’은 2개 지표로 나타남
- 2021년도에는 보완필요 지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지표 이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표 2〉 평가결과 보완필요 및 해당없음의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 보완 필요 (1개 지표) | -분야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중에서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관들의 인권 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지표임 ※ 2020년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 171개 협력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관들의 인권보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았음 |
| 해당사항 없음 (2개 지표) | -분야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중에서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 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지표와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지표임 -우리 원은 보안 사무를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2개의 지표는 해당없음 |

〈표 3〉 2020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 구분 | 항목 | 2020년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필요 | 아니요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30 | - | - | - |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8 | - | - | - |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4 | - | - | - | - |
| 4-1 |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 8 | - | - | - | - |
| 4-2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7 | - | - | - | - |
| 4-3 |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 10 | - | - | - | - |
| 5 | 산업안전 보장 | 12 | - | - | - | - |
| 6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7 | 1 | - | - | 2 |
| 7 | 저작권 보호 | 3 | - | - | - | - |
| 8 | 환경권 보장 | 11 | - | - | - | - |
| 9 |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 11 | - | - | - | - |
| 10 | 기타인권 보호 | 9 | - | - | - | - |
| 합계 | | 140 | 1 | | | 2 |

4. 2019년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 (권고사항 1)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를 일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
 - 2020년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 수행 및 국토정책Brief를 발간 실적
 - ① 연구과제: 10건 수행
 -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수시)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기본)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수탁)
 - 통합 공공임대주택 관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운영방안 연구(정책)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정책)
 - 쉼트리피케이션 대응수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정책)
 - 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정책)
 - 임차가구 주거입지 분석을 통한 주거비·교통비 경감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수탁)
 - 2019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일반)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일반)
 - ② 국토정책Brief 3건 발간
 -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2.3)
 -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7.20)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7.27)
- (권고사항 2) 관리자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감사실), 갑질피해 구지지침 제정(9.14), 열린소리함(익명)·원장대화방(익명) 운영, 전직원 교육 등 직원 간 갈등·갑질 예방에 노력
 - 유연근무제 및 보상휴가제 실시
- (권고사항 3) 용역 위탁기관 및 관련 협력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관계 설정 보완
 -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각서’와 ‘협력기관(업체)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받아 협력기관도 인권경영을 준수하고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를 요구
 - 171개 협력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인권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피해사항 파악 및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 2016년부터 계약서에서 ‘갑·을’ 관계 표현을 삭제하고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로 표기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자 및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2020년에 수행한 기관 고유사업 중 도시부문 5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구심의위원회의 참관, 연구책임자 면담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평가
- 인권경영위원회(12.14)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작성(9. 1~12.28)

2. 2020 년도 국토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기준

(1) 개요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하여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준 작성
→ 사전 조사 및 과제책임자 토론을 통해 기준 조정 후 확정 → 평가

(2) 국토연구 관련 이해관계자 유형 구분

- 2019년에 제안된 이해관계자를 수정 보완
- 국토정책의 직접적 대상자로 공기업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국토정책의 시행자로서 국토정책으로 인권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유형에서 제외

<표 4> 국토 분야 이해관계자의 유형(예시)

| 구분 | | 내용 |
|-----------|----------|---|
| 사회·경제적 차원 | 재산 소유 | -토지, 건물(주택 포함) 소유자, 어업권 등의 보유자 -임대인, 임차인 -차량 소유자/대중교통 이용자 -민간 기업 운영자/노동자 |
| | 소득계층 |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실업자, 은퇴자 |
| | 인구 특성 | -혈연 보통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고령층, 청년층) -미래세대, 이주민 |
| 공간적 차원 | 근린지역 | -사업 대상 지역 내 주민/사업 대상 지역 인근 주민 -교외지역 거주자/도심부 거주자 |
| | 도시 및 지역 | -낙후 지역 주민/노후 산업단지 주변 거주자/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거주자 -촌락/도시 지역 거주자 |
| | 국가 및 글로벌 | -우리나라 국민/저개발국가 국민/세계시민 |

(3) 국토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인권 종류

-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보호할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데,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는 인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기본권임
-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인권 종류로 분류

〈표 5〉 국토 분야와 관련된 인권 유형

| 유형 | | 내용(예시) | 근거 |
|-----|-------------------------|--|--------------------|
| 자유권 | 재산권 | - 주택, 토지 및 건물, 차량 등 물건을 소유할 권리 | 헌법 제23조 |
| |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 - 살던 곳에 계속 살 권리/이사할 권리 -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는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 헌법 제14조 헌법 제16조 |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적 기본권) | -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에 대한 권리 - 필요한 사회복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여성, 노인 및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헌법 제34조 |
| |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주거권) | - 강제 퇴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권리 -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살 권리 -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 | 헌법 제35조 3항 |
| | 환경에 대한 권리 (자연환경/생활환경) | -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권리 - 쾌적한 자연 환경, 녹지, 공원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용할 권리 - 필요한 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권리 - 도로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 | 헌법 제35조 1항 |
| | 일 할 권리(노동의 권리) | -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권리 -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 헌법 제32조 |
| | 교육 받을 권리 | - 집 근처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 헌법 제31조 |
| | 보건에 관한 권리 | -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받을 권리 | 헌법 제36조 3항 |

(4)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 6〉 국토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 제안된 국토정책으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 |
|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인권)이 무엇인가? (복수응답 가능/ 표4 참조하여 단답형으로 작성) | 재산권 | |
| |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 |
| | 사회적 기본권 | |
| | 주거권 | |
| | 환경권 | |
| | 기타 | |
| 국토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 자료(증거)는 무엇인가? | |
| |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 |

3. 2020 년도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방향

- 국토연구원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본 인권영향평가에서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와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결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적으로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권 침해되는가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인권에 대해 필요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안

(2) 논증과 토론을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

- 연구방법 및 증거로 삼은 자료는 대부분 전문가 면담 및 전문가 설문조사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
- 신문기사 등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주민 조사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미디어 내용 분석결과를 지역 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효과가 컸을 것임
- GIS 등을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쇠퇴지역 현황이나 국토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증거 자료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3) 도시분야 연구내용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2020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는 도시분야 연구로, 도시연구본부 기본과제 5건 중 도시재생 관련 과제가 3건, 수도권 및 전국의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 및 개발 정책 관련 과제가 2건으로, 신개발보다는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정책 연구가 더 많음
- 도시연구본부의 기본과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이해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시 내부의 쇠퇴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도시 외곽에 개발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거주민도 검토되고 있음
- 도시 내부 쇠퇴지역 거주민들의 인권(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으로서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쇠퇴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음
-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주택으로부터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권리,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권리, 지역 주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할 권리 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주민참여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시민권(자유권) 보장도 실현될 수 있음

(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도시부문 5개 과제)

| 연번 | 연구과제별 평가결과 | |
|----|--------------|---|
| 1 | 과제명 평가 결과 | <p>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모델 구축방안: 근린 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시 지역 거주자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도심 거점 중심으로 산업 육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경우 해당 도시 외곽의 신개발 지역이 방치될 우려가 있으나, 본 연구 제안사항이 외곽지역 거주자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잠재적으로 상충될 수 있는 외곽지역 거주자의 인권에 대해 지방정부가 대도시 정책 방향과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서 나아가 도심 구시가지와 외곽 신시가지에 대한 균형 잡힌 개발 및 육성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인구 감소 및 실업률, 산업구조 등에 대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지방 중소도시 쇠퇴지역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해당 지역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제안하고 있음 |
| 2 | 과제명 평가 결과 | <p>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공간관리제도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 고밀개발과 기성시가지 쇠퇴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도시 밀도 관리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도심부 거주민 및 교외 주거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권 실현과 연결될 수 있음 -도시 외곽 개발을 밀도로 규제했을 때 이후 개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외곽지역 개발로 수익을 올리는 주체(개발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나, 제안사항이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장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 상 적절한 밀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세대와 도시 거주자 전반의 환경권 및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개발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교외의 대규모 주거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증거를 가시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 -외곽의 고층 고밀개발이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유추하고 있음 |
| 3 | 과제명 평가 결과 | <p>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주거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시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수도권 1기, 2시 신도시 정책을 평가하고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신도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의 바람직한 관리 방안을 도출 -수도권 주거안정, 수도권 균형발전(인구 및 기능 분산, 거점 형성), 신도시 자족수준 확보가 신도시 정책 추진목표였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 -주택 공급 목표로 대규모 택지개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 부재, 공간구조의 비효율성 확대(장거리 통근 확대), 기존 도시와의 연계 부족, 기반시설 공급 시기 불일치 등을 신도시 개발 후 문제점으로 지적, 주거 안정뿐 아니라 광역교통체계 확충 및 지역거점 형성을 통한 기능분산, 지역 일자리 창출, 편의시설 확충, 여가공간 확보 등 자족성·편의성 제고 필요 |
| 4 | 과제명 평가 결과 | <p>지역재생 선순환 경제 모델 다각화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사업의 결과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쇠퇴 지역 거주자의 환경권 및 노동권 등 사회권과 거주지 선택의 권리인 자유권을 실현시킬 수 있음 -쇠퇴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배제됨으로써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확산된다면 이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권은 보장받을 수 있음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련 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참여 제고방안 모색 필요 -사례 지역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약 및 가능성 탐색 -도시재생사업이 대상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 5 | 과제명 평가 결과 | <p>도시재생뉴딜 정책 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쇠퇴한 구도시 지역 거주자의 환경권, 노동권, 거주할 권리(자유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전반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침해되는 인권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국토정책을 통한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 선정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민간투자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평가와 언론평가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 제안 |